### 大田直轄市議會會議規則中改正規則(案)

議案 152

發議日字: 1992. 8. 24.

發 議 者:李憲鍾議員外 人

#### 1.提案理由

現行規定에 議案의 提出期限이 明示되어 있지 않아 議案이 遲延됨으로 充分히 審査할수 있는 時間이 없었고, 議員의 請暇 및 缺席계를 議長에게 提出토록 되었으나 逮捕·拘禁時에는 關係機關에서 適報된 令狀寫本을 請暇書로 代替토록 하기 위하여 改正하려는 것임.

#### 2. 主要骨子

- 가. 議會議員은 當選初에 當選證書를 議會事務處에 提示하고 發錄 하는 것은 當選通知書로 代替하는 것임. (案 第2條)
- 나. 議員의 請暇 및 缺席계를 議長에게 提出토록 되었으나, 逮捕拘禁時에는 政府에서 通報된 令狀寫本을 請暇書로 代替토록 改正 (業 第7條)
- 다. 議案의 提出, 發議期間을 集會日 7日前에 提出토록 明示(案 第 20條)
- 라. 議會에서 實施하는 選擧方法 明示 (案 第46條 第4項)

## 대전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(안)

대전직할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"당선증서"를 "당선통지서"로 한다.

제7조중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만, 체포 또는 구금시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사본을 청가 서로 본다.

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단 폐회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,

제20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, 기타 안건의 경우에는 예산명세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시장, 교육감은 의안을 집회일 7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. 다만, 긴급한 의안은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,

- ④다음의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무기명투표 로한다.
- 1.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선거
- 2.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
- 3. 인사에 관한 안건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新舊條文對比表

| 現      | 行             | 改     | 正(案)     | 備       | 考 |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|---|
| 第2條(登鈞 | <b>录)議會議員</b> | 第2條(登 | 錄)議會議員   |         | 1 |   |
| (이하"詩  | 負"이라한         | (이하 " | 議員"이라한   | 101     |   |   |
| 다)은 任  | 期初에 當選        | 다)은 f | £期初에 當選  |         |   |   |
| 證書를 請  | (會事務處에        | 通知書   | 景 議會事務處  |         |   |   |
| 提示하고   | 登錄하여야         | 에 提示  | 하고 登錄하   |         |   |   |
| 한다.    |               | 여야 한  | 다.       |         |   |   |
| 第7條(請假 | 足以缺席)         | 第7條(請 | 假 및 缺席)  |         |   | 3 |
| ①議員이   | 事故로 인         | ①議員。  | 事故로 인    |         |   |   |
| 하여 議會  | 에 出席하         | 하여 議  | 會에 出席하   |         | , |   |
| 지 못할   | 때에는 그         | 지 못할  | 때에는 그    |         | * | ľ |
| 理由와 期  | 間을 記載         | 理由와   | 期間을 記載   | 9       |   |   |
| 한 請假書  | 를 미리 議        | 한 請假  | 書를 미리 議  |         |   |   |
| 長에게 携  | 是出하여야         | 長에게   | 提出하여야    |         |   |   |
| 한다.    |               | 한다. ㅁ | ት만,逮捕 또  |         |   |   |
| (但書規定  | 至 新設)         | 는 拘禁  | 時에는 政府   |         |   | . |
|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| 報된 令狀寫   | :<br>** | * |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| 本을 請  | 假書로 본다.  |         |   | * |
| ②議員의   | 請假는 5日        | ②議員의  | 의 請假는 5日 |         | * |   |
| 以內의 건  | 선은 議長이        | 以內의   | 것은 議長이   |         |   |   |
| 許可하고   | , 5日을 超       | 許可から  | 고 5日을 超過 |         |   | × |
| 過하는 건  | 것은 議會에        | 하는 것  | 은 議會에서   |         |   |   |
| 서 이를   | 許可한다.         | 이를 許  | 可한다. 단,  |         |   |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| 閉會中   | 에 提出된 請  |         |   |   |
| (但書規定  | 官 新設)         | 假는 議  | 長이 許可한다  | ac 160  |   |   |

| 現              | 行                        | 改                         | 正(案   | )          | 備   | j . | 考     |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|
| 第20條(議3<br>發議) | 록의 提出·                   | 第20條(議<br>發議)             | 案의 提出   | <b>K</b> · |     |     |       | 3 |
| 案은 市長          | 議決望 議<br>,教育監,委          | ①〈現行                      | 과 같음  | >          | a   |     | ×     | ٠ |
| 出하거나           | 議員이 提<br>發議한다.<br>]은 在籍議 | ·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 , |
|                | <b>上의 연서로</b>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|     |     | 18    |   |
| 〈新設〉           | 9                        | ②豫算上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|
| . 8 .          | ÷                        | 수반되는<br>他 案件:             | 의 경우어   | 는          | G.  |     |       | ,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豫算明細<br>提出하∝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|     | u u | e d : |  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市長,<br>案을 集 <sup>1</sup> | 500 000 <b>2</b> 12 0000 5000 <del>3000</del> |            | a a |     | ř     |   |
| ,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提出하여<br>나만,緊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 ٠ |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議案은 計                     | 議長과 協<br>定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協議         |     | ě   |       |   |
| 第46條(第         | 5汝方法)                    | 第46條(                     | 票決方法  | )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|
| ①票決할           | 때에는 議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sub>万</sub> 과 같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| ]으로 하여<br>또는 學手하         | <b> </b>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|   |

| 現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改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正(案)            | 備 |                   | 考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게 하여 <sup>미</sup> 한다.             | 「否를 決定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ent of the second |   |
| 同意를 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會議의 議<br>때에는 記<br>때記名投票           | ②〈現行3                        | 과 같음〉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|
| 한 이의 4<br>서 異議가<br>定한 때에<br>었음을 宣 | 案件에 대所無를 물어없다고 認는 可決되布할 수 있나, 異議가 | ③〈現行ぶ                        | 라 같음 〉          |   | es es             |   |
| 있을 때에<br>또는 第25<br>로 <b>票決</b> 하  | 는 第1項<br>頁의 方法으<br>여야 한다.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|
| 各種 選舉<br>特別한 規                    | · 實施하는<br>는 法令에<br>定이 없는<br>投票로한다 | 法令에 特이 없는한<br>의 없는한<br>票로 한다 | 序別한 規定<br>사無記名投 |   |          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再議要                          | 治團體長의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|   |